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3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병도, 강대호, 권수정,  
김경우, 김기대, 김인제,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양민규,  
유정희, 이경선,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의원(42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공정경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공정경제위원회를 개별 운영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 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마.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사. 간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

자.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공정경제 관련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공정경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산업·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공정경제·민생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재정·경제 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6.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제1호, 제2호,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경제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u>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6조의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대신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11조(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u>자문 및 심의</u>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lt;삭 제&gt;</p> <p><u>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공정경제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u></p>

현 행	개 정 안
	<p>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공정경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u></li> <li>2. <u>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u></li> <li>3. <u>산업·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u></li> <li>4. <u>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공정경제·민생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u></li> </ol>

현 행	개 정 안
	<p><u>은 사람</u></p> <p><u>5. 재정·경제 분야에서 서울특별</u> <u>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u> <u>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u> <u>는 자로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u> <u>의원</u></p> <p><u>6.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u> <u>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으로 시장이 제1호, 제2호, 제4</u> <u>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u> <u>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u></p> <p><u>〈신 설〉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u> <u>닌 위원</u><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u>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u> <u>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u> <u>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u> <u>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신 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u> <u>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u> <u>업무를 총괄한다.</u></p> <p><u>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u> <u>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 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 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 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p> <p>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 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p>

현 행	개 정 안
	<p>다.</p> <p>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p> <p>〈신 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공정경제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p> <p>〈신 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p>

현 행	개 정 안
	<p><u>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u></p> <p><u>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p> <p><u>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u></li> <li><u>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u></li> <li><u>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u></li> </ol> <p><u>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실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2.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3.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p> <p><u>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제19조(협력체계 구축) (현행과 같음)</p> <p>제20조(예산지원) (현행과 같음)</p> <p>제2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1101200000068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병도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12	
회신일 : 2021.10.13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1항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기능을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으나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운영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공정경제위원회(제11조제1항) 운영비용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 28,500천원(연평균 5,700천원)

- 추계의 전제

- 공정경제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15명으로 하고, 위원 중 서울시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외부위원 12명으로 하며, 위원회의 개최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85,5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	-	-	-	-	-	-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1조)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소계(b)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총비용(b-a)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 위원회 설치·운영비 ≍ 28,500천원

- 5년간 위원회 설치·운영비 산출방식  $\sum_{i=1}^5$ (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비용 = 5,70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업무추진경비

= (200천원 × 12명 × 2회) + (30천원 × 15명 × 2회)

= 4,800천원 + 900천원

= 5,700천원

※ 회의참석 수당은 2시간 이상 진행: 1인당 20만원 적용(시 공무원 및 시의원 지급제외)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020.7.) 참조)

※ 업무추진비 단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 따라 3만원으로 책정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 02-2180-7952

e-mail : ehds0@seoul.go.kr